



2026년 예산안 Edition Tax in Motion

2026년 예산안에서 총리 및 재무장관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소개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Introducing Tax in Motion

PwC는 심도 있는 전문성과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결합하여, 고객이 각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PwC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새롭게 리프레시하였습니다.

이번 브랜드 리프레시의 일환으로, 저희는 'TaXavy'의 새로운 모습과 정체성을 'Tax in Motion'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입니다. 이는 **Always moving, always ahead**라는 세무 인사이트에 대한 PwC의 역동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외국 원천 소득 면제 4년 더 연장



말레이시아에서 수령한 적격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한 면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세금 감면 가족 중심 세제 혜택 확대



어린이집 비용 공제 대상이 등록된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되며, 자녀를 위한 생명보험료 또는 타카풀(Takaful) 납입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 과세연도부터 발효

관광 인센티브 증분 소득 100% 면세



적격 관광 사업자는 2026년 말레이시아 방문 연도를 지원하기 위해 증분 소득에 대해 100%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과세연도 및 2027 과세연도에 유효

유한책임합자회사(LLP)의 이익 분배에 대한 과세



0% ~ 2%

개별 LLP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이익 중 연간 100,000링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2026 과세연도부터 발효

중소·영세기업(MSME)을 위한 AI 인센티브



50%의 추가 공제

AI 교육 관련 적격 지출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에 한 번 한도로 50%의 추가 공제가 허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적용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도입



2026년 1분기

제조업 부문은 2026년 1분기부터, 서비스업 부문은 2026년 2분기부터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가 시행됩니다.

2026년 1분기부터 시행

차례

외국 원천 소득
5

개인 세금
7

세제 혜택
12

간접세
30

인지세
34

탄소세
37

용어집
39

1

외국 원천 소득



외국 소득 면세 혜택 연장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외국 원천 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소득/이익의 유형 | 적격 납세자 | 면세 기간 |
|------------------------------|---|--------------------------------------|
| 외국자본자산 처분 이익 | 거주 법인, LLP, 신탁기구 및 협동조합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
| 해외에서 발생하여 말레이시아로 유입된 배당소득 | 거주 법인, LLP 및 개인(말레이시아에서 파트 너십 사업을 통해 받은 배당 소득과 관련하여) |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
| 1967년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모든 소득 | 거주 개인(말레이시아 외부에서 말레이시아에 서 받은 말레이시아 내 파트너십 사업의 수입원 제외) | 2022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 지 |
| 1967년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모든 소득 | 단위 신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

해외 투자 수익의 본국 송환을 장려하기 위해 면세 혜택이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소득/이익의 종류 | 적격 납세자 | 면세 기간 |
|------------------------------|--|--|
| 외국자본자산 처분 이익 | 거주 법인, LLP, 신탁기구 및 협동조합 | 2027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 해외에서 발생하여 말레이시아로 유입된 배당소득 | 거주 법인, LLP, 개인(말레이시아에서 파트너 십 사업을 통해 받은 배당 소득과 관련하여), 협 동조합 및 신탁 기구 | 2027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 1967년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모든 소득 | 단위 신탁 | 2027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PwC 코멘트

이번 면세 연장 및 적용 범위의 정비는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고려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정책적 확실성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한편, 2027년 과세연도 종료 시 만료 예정인 라부안(Labuan) 법인 배당소득에 대한 별도 면세 조치는 현재 갱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

개인 세금



개인 세금

LLP 파트너의 이익 분배에 대한 과세 도입

현재, 1967년 소득세법 제6조 스케줄 12C항에 따라 LLP(유한책임합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이익 분배금은 파트너에게 소득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누진적인 개인소득세 체계를 마련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과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과세 대상자

- 개인 파트너:
- 거주자 개인
 - 비거주자 개인

과세 기준

연간 100,000링깃을 초과하는 이익 분배금에 대해 과세

세율

허용 가능한 구제 및 공제(규정된 공식에 따라 계산)를 고려한 후 이익 분배로 인한 과세 소득에 2%가 부과됩니다.
2%의 세율이 적용되며, 허용되는 공제 및 소득공제를 반영한 후의 과세소득 기준으로 계산 (규정된 공식에 따라 산정 예정)

시행 시기

2026 과세연도



개인 세금

개인 소득공제

| 현행 | 개정안 |
|--|--|
| 예방접종비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대상) | |
| 다음 백신 접종 비용에 대해 최대 RM1,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렴구균•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로타바이러스• 수두• 수막구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Tdap)• 코로나19 (COVID-19) | 국립의약품규제청(NPRA)에서 등록 및 승인된 모든 백신으로 공제 대상 확대 (2026 과세연도부터 시행) |
| 의료비 소득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대상) | |
| 다음 항목에 대해 최대 RM10,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i.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중증 질환ii.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난임 치료iii.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예방 접종 (RM1,000 한도)iv.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치과 검진 및 치료 비용 (RM1,000 한도)v.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종합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진 또는 상담, 코로나 19 검사(자가 진단키트 포함), 의료기기 당국에 등록된 모든 자가검사 의료기기 구입(혈당측정기, 혈압계 및 체온계 등),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질병 조기진단 검사 비용(혈액 검사, 초음파, 유방 촬영 및 자궁경부암 검사 등) (RM1,000 한도)vi. 18세 미만의 학습장애 아동(자폐, ADHD, 전반적인 발달 지연(GDD), 지적장애, 다운증후군, 특정 학습 장애 등)을 위한 평가 및 진단, 조기 개입 프로그램 및 재활 치료비 (RM6,000 한도) | 카테고리 (vi)의 공제 한도를 RM6,000 → RM10,000으로 상향 조정 (2026 과세연도부터 시행) |

개인 세금

개인 세금 감면(계속)

| 현행 | 개정안 |
|---|---|
| 생명, 교육 및 의료 보험에 대한 보험료 또는 타카풀 납입액 | |
| 개인 소득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제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i. 본인, 배우자를 위한 생명 보험료 또는 타카풀 납입액 (RM3,000 한도)ii.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를 위한 교육 및 의료 보험료 (RM4,000 한도) | 생명 보험료 또는 타카풀 납입액에 대한 RM3,000한도 공제 대상에 자녀를 포함하도록 확대. 자녀를 위한 생명보험료 또는 타카풀 기여금, 교육 및 의료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i. 18세 미만 미혼ii. 18세 이상, 미혼이며 고등교육기관 재학iii. 미혼이며 장애가 있는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2026 과세연도부터 시행) |
| 보육 또는 유치원 비용 | |
| 다음 적격 보육 시설에 대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에 대해 최대 RM2,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i. 사회복지부에 등록된 보육 센터(TASKA)ii. 말레이시아 교육부에 등록된 유치원(TADIKA) 2020 과세연도에서 2027 과세연도까지 추가 RM1,000 공제 허용. |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해 공제 대상 시설을 사회복지부에 등록된 일일보육센터 및 방과후 돌봄센터까지 확대. 추가 RM1,000 공제를 영구화하여, 총 공제한도를 RM3,000으로 상향. (2026 과세연도부터 시행) |

개인 세금

개인 세금 감면(계속)

| 현행 | 개정안 |
|---|--|
| 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비용 | |
| <p>환경 지속가능성 관련 지출에 대해 최대 RM2,500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됨.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기차(EV) 충전 시설의 구매, 임대, 설치 및 장비의 할부구매, 또는 구독료 (2022 과세연도부터 2027 과세연도까지)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기계 구매 (2025 과세연도부터 2027 과세연도까지 3년 이내에 한번 청구 가능) | <p>지속 가능성 관련 비용은 다음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가정용 폐쇄회로(CCTV) 설치 <p>해당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는 2개 과세연도 이내에 1회에 한해 허용됨. (2026 과세연도부터 2027 과세연도까지)</p> |
| 관광 명소 및 문화 프로그램 입장료 | |
| <p>2020 과세연도부터 2022 과세연도까지 다음 비용에 대해 최대 RM1,000의 소득공제가 제공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i.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MOTAC)에 등록된 숙박시설 이용ii. 관광 명소 입장료iii.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MOTAC)에 등록된 여행사를 통한 국내 관광 패키지 구매 | <p>다음과 같이 입장료 비용에 대해 최대 RM1,00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i. 박물관, 테마파크, 국립공원, 해양공원, 동물원, 지질공원 등의 관광 명소ii.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 <p>(2026 과세연도 적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f4a460; padding: 10px; margin-top: 10px;"><p>PwC 코멘트: 다음의 세부 지침이 필요합니다.</p><ol style="list-style-type: none">관광 명소와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의 정의와 범위소득공제를 청구하기 위한 서류 요구 사항</div> |

3

세계 혜택



세제 혜택

새로운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성과 기반의 신규 투자 인센티브 프레임워크는 당초 2025년 3분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제조업 부문에 대해서는 2026년 1분기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서비스업 부문은 2026년 2분기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청렴 및 반부패 프로그램 기부에 대한 소득세 공제

국가 반부패 전략(NACS) 2024 - 2028의 이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됩니다.

a) 시민사회단체(CSO)가 주최하는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 조건에 따라 1967년 소득세법 제44(11C)조에 따라 국익 프로젝트로 인정하여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 CSO가 주관하는 승인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현금 기부금은 총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MOF에 접수된 신청에 한함)

PwC 코멘트

추후 세부 지침이 요구되는 항목:

-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의 기준 및 범위
- 승인 기간 및 소득 공제 적용 시작일

자가 소비용 GITA 자산 인센티브

국내에서 제조되고 MyHIJAU 인증 마크를 받은 녹색 기술 제품을 자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100% 투자소득공제(ITA)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행시기는 미정)

세제 혜택

| | |
|-----------|------------|
| 현행 | 개정안 |
|-----------|------------|

공장,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가속자본공제(ACA)

기업은 사업목적에 위해 발생한 적격자본지출(QCE)에 대해 1967년 소득세법 별표 3에 따라 자본공제(CA)를 청구할 수 있음.

다음의 적격자본지출(QCE)에 대해 가속 감가상각공제(ACA)를 허용하며, 기업은 해당 지출을 2년 내 전액 공제할 수 있음.

| 자산 유형 | 취득 시 공제율(%) | 연간 공제율(%) |
|----------------------|-------------|-----------|
| 자동차, 중장비 | 20 | 20 |
| 공장 및 일반 기계 | 20 | 14 |
| 기타 | 20 | 10 |
| 정보통신기술장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 40 | 20 |

| 항목 | 적격 지출 | 공제 비율 |
|----|---|----------------------|
| 1. | 현지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공장, 중장비 및 일반 기계류 | 취득 시: 20% 연간: 40% |
| 2. | 정보통신기술장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 |
| 3. | 맞춤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컨설팅, 라이선스 및 부대 비용 | |

(2025년 10월 1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적격자본지출(QCE)에 대해 적용)

PwC 코멘트

- ACA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현지 제조업체로부터 자산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지 제조업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 현행 | 개정안 |
|--|---|
| 대형 차량용 속도 제한 장치("SLD") 구매를 위한 가속자본공제(ACA) | |
| <p>SLD 구매는 취득시 공제 20%, 연간 공제 10%로 자본공제(CA)를 받을 수 있음.</p> | <p>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당 최대 RM4,000의 SLD 구매 지출에 대해 가속자본공제(ACA)를 제공할 것을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SLD 개조 설치는 도로 교통부에서 인정하는 검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ii. SLD 설치는 이러한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대형 차량에 적용되며 다음 범주로 제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총 차량 중량("GVW")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 차량; 그리고 b. 총 차량 중량("GVW")이 5,000kg을 초과하고 8명 이상의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차. <p>ACA는 1년 이내에 완전히 청구할 수 있으며, 취득시 공제 20%와 연간 공제 80%로 구성됨.</p> <p>(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행된 SLD 설치에 적용)</p> |

세제 혜택

| 현행 | 개정안 |
|---|--|
| AI 교육에 대한 세제 혜택 | |
| <p>제조 및 비제조 활동(호텔 및 관광 산업 포함)을 영위하며 인적자원개발기금(HRDF)에 기여하지 않는 자격 있는 기업이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가 허용됨.</p> | <p>중소·영세기업 (HRDF에 기여하는 기업 포함)이 MyMahir 국가 AI 산업위원회에서 인정한 AI 교육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2개 과세연도 중 한 번 50%의 추가 공제를 허용함.</p> <p>(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Tal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에 접수된 신청에 한함)</p> |
| 장학금에 대한 세제 혜택 | |
| <p>기술 및 직업 교육, 디플로마,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등 고등교육을 이수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이중 소득공제가 허용됩니다. 해당 학생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시민 • 전일제 학업 중일 것 • 소득이 없을 것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월 소득이 RM10,000을 초과하지 않을 것 | <p>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장학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음과 같이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jil Teknik Vokasional / Diploma / Bachelor's Degree를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회사에 이중 소득 공제를 허용. • 이중 소득 공제 범위는 공인 전문자격 과정까지 확대. •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가구 월소득 기준은 RM15,000 이하로 상향 조정. • 해당 인센티브의 적용을 5년 연장. <p>(2026 과세연도부터 2030 과세연도까지 유효)</p> |

세제 혜택

| 현행 | 개정안 |
|--|--|
| <p>벤처캐피탈(VC)에 대한 세제 혜택 검토</p> | |
| <p>벤처 캐피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제공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벤처캐피털회사(V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저축 또는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샤리아 기준 예금에서 발생한 수익을 제외한 모든 법정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b. 면제는 증권위원회(SC)의 최초 인증일로부터 5개 과세연도(YA) 동안 적용되며, VCC는 자금의 최소 50%를 시드 단계, 창업 단계 및 초기 단계 투자에 사용해야 함. 투자 시점에 VCC와 VC는 관계회사가 아니어야 함. <p>VCC는 201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16)에 따라 설립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 벤처캐피탈운용회사 (VC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 과세연도부터 2026 과세연도까지 성과 보너스 및 이월이자를 포함한 이익 분배, 운용 수수료 및 성과 수수료에서 파생된 법정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p>VCC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SC에 등록되어야 하며, SC의 최초 인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p> | <p>벤처캐피털회사의 투자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다음과 같이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벤처캐피털회사(V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저축, 정기예금 또는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수익을 제외하고 VCC의 모든 소득에 5%의 법인세율 부과. VCC는 자금의 최소 20%를 현지 VC에 투자해야 함. b. 세제 혜택은 VCC가 SC로부터 첫 번째 인증을 받은 해부터 시작하여 10년 또는 펀드의 잔여기간 동안 적용됨. SC의 최초인증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함. <p>동 세제 혜택은 2012년 유한책임파트너십법 및 2010년 라부안유한파트너십및유한책임 파트너십법에 따라 설립된 LLP로서 1967년 소득세법(ITA)에 따라 과세하기로 결정한 LLP에도 확대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 벤처캐피탈운용회사(VCMC)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 과세연도부터 2035 과세연도까지의 수익배분, 운용 수수료 및 성과 수수료에서 파생된 소득에 대해 10%의 세율 적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PwC 의견: 계속해서 유효한 기존 면세 조항들과 VCC 및 VCMC에 대한 개정 제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p> </div> |

세제 혜택

| 현행 | 개정안 |
|---|--|
| <p>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투자(SRI) 수쿠크(Sukuk) 및 채권 보조금 제도에 대한 소득세 면제</p> | |
| <p>Green SRI 수쿠크 발행자는 자본시장개발기금 (CMDI)을 통해 증권위원회(SC)에 Green SRI 수쿠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은 수쿠크 발행 시 발생한 외부 검토 비용의 90%, 최대 RM300,000까지 지원함.</p> <p>또한, Green SRI 수쿠크 발행자가 SC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면제가 적용됨.</p> <p>Green SRI 수쿠크보조금은 이제 SRI 수쿠크 및 채권 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증권위원회(SC)의 승인을 받은 다음의 금융상품 발행을 포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RI 수쿠크 • SRI 연계 수쿠크 • ASEAN 녹색, 사회적, 지속가능 채권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 • ASEAN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검토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며, 최대 RM300,000까지 지원됨. • 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ASEAN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ASEAN Taxonomy for Sustainable Finance)에 부합하는 수쿠크 및 채권으로 확대됨. • 소득세 면제혜택은 3년 연장됨. <p>(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SC에 접수된 신청서에 한함)</p> |

세제 혜택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연장됩니다.

| 세제 혜택 | 연장 기간 | 유효기간 |
|--|--|--|
| <p>1. 상장 비용에 대한 공제</p> <p>Bursa Malaysia의 Main 마켓, ACE 마켓, LEAP 마켓에 상장하는 기술 기반 기업 및 중소·영세기업(MSMEs)이 부담한 최대 RM150만의 적격 상장비용에 대해 소득 공제.</p> <p>i. Bursa Malaysia 및 SC에 납부하는 수수료 ii. 전문가 수수료 iii. 인수, 배정 및 중개 수수료</p> <p>소득공제는 2023 과세연도부터 2025 과세연도까지 제공.</p> | <p>5년</p> <p>적격 기업의 범위가 에너지 및 유틸리티 분야의 중소·영세기업까지 확대됨</p> | <p>2026 과세연도부터 2030 과세연도까지</p> |
| <p>2. 비자원 기반 R&D 성과를 상업화하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 공제</p> <p>말레이시아의 공공 연구기관 또는 공공/민간 고등교육기관이 수행한 비자원 기반 R&D 성과를 상업화하는 자회사에 대해,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에 투자한 금액만큼 단일 소득공제 제공.</p> <p>(2025년 12월 31일까지 MIDA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함)</p> | <p>5년</p> | <p>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MIDA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함</p> |

세제 혜택

관광 프로젝트에 대한 개보수 비용의 소득공제

사업장 개보수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1967년 소득세법(ITA) 제33(1)조에 따라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 2026(Visit Malaysia Year 2026)에 맞춰 국내 관광 상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관광 프로젝트 운영자가 사업장을 개보수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관광·문화부(MOTAC)에 등록된 관광 프로젝트 운영자가 사업 목적의 개보수 작업을 위해 지출한 적격 지출에 대해 최대 RM500,00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적격 지출에 적용)

PwC 코멘트

다음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합니다.

- a) 적격 지출의 범위
- b) 적격 지출이 외부 감사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세제 혜택

| 현행 | 개정안 |
|---|---|
| 여행사에 대한 세제 혜택 | |
| <p>관광 패키지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음 관광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법정소득(SI)에 대해 100% 면세 혜택을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매년 최소 200명의 내국인이 참여하는 관광 패키지 제공 ii.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 없음 <p>(2022 과세연도에 만료됨)</p> | <p>여행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바운드 관광 패키지에서 발생한 증분 소득에 대해 100% 면세 혜택을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운영자는 연간 최소 1,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함. ii. 증분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말레이시아 인바운드 관광 패키지 운영 사업에서 발생한 적격 소득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 간의 차이를 의미함 <p>(2026 과세연도 및 2027 과세연도에 유효)</p> |
| 성과보상 해외여행, 컨퍼런스 및 무역 전시회 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 | |
| <p>컨퍼런스를 홍보 및 개최하는 기업,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음:</p> <p>주요 활동이 컨퍼런스를 홍보하고 조직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최소 500명의 외국인 참가자를 유치할 경우, 법정소득(SI)에 대해 100% 면세 • 1997 과세연도부터 시행 <p>주요 활동이 컨퍼런스 홍보 및 조직 이외의 활동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최소 500명의 외국인 참가자를 유치할 경우, 법정소득(SI)에 대해 100% 면세 • 2020 과세연도부터 2025 과세연도까지 유효 | <p>문화예술관광부(MOTAC)의 인증을 받은 주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법정소득(SI)에 대해 100% 면세 혜택을 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성과보상 해외여행 외국인 참가자 연간 최소 1,500명 유치 또는 b) 컨퍼런스 외국인 참가자 매년 최소 2,000명 유치 또는 c) 전시회 외국인 참가자 매년 최소 3,000명 유치 <p>(2026 과세연도 및 2027 과세연도에 유효)</p> |

세제 혜택

| 세제 혜택 | 연장 기간 | 유효기간 |
|---|--|---|
| <p>예술, 문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개최 승인된 활동을 개최하는 주최자에게 법정소득(SI)의 50%에 대해 면세 혜택 제공.</p> <p>i. 문화예술관광부(MOTAC)가 승인하고 Istana Budaya, National Visual Arts Gallery 또는 Petronas Philharmonic Hall에서 개최 되는 예술 및 문화 활동</p> <p>ii. 청소년체육부(KBS)가 승인한 국제 수준의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 대회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고 외국인이 참가하는 경우</p> <p>(2020 과세연도부터 2025 과세연도까지 유효)</p> | <p>2년 범위가 확장됨.</p> <p>i. 문화예술관광부 (MOTAC)가 승인한 관광 활동 (단, 콘서트 공연은 제외)</p> <p>ii. 예술, 문화 및 관광 활동의 개최 장소를 말레이시아 내 MOTAC가 승인한 모든 장소로 확대.</p> <p>iii. 청년체육부(KBS)가 승인한 국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대회</p> | <p>2026 과세연도 및 2027 과세연도</p> |

세제 혜택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전환하는 경우의 특별소득공제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전환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격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소득공제가 제안되었습니다. 단, 공제 한도는 최대 RM1,000만으로 제한됩니다.

(시행일은 미정)

PwC 코멘트

제안된 특별소득공제는 주거용 유닛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본적 성격의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 비용(qualifying expenses)”의 정의, 해당 주거용 부동산이 이후에 매각되는 경우, 주택의 가치에 대한 조건이 부과되어 저렴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도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

| 현행 | 개정안 |
|----|-----|
|----|-----|

식량 안보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 혜택

승인된 식량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제공됨:

| 적격 기업 | 세제 혜택 |
|----------------------------------|--------------------------------------|
| 신규 식량 생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자회사에 투자하는 기업 | 해당 과세연도(YA)에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소득공제 제공 |
| 신규 식량 생산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기업 | 법정소득(SI)에 대해 10개 과세연도 동안 100% 소득세 면제 |
| 기존 기업이 식량 생산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경우 | 법정소득(SI)에 대해 5개 과세연도 동안 100% 소득세 면제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말레이시아 농업식량안보부(MAFS)에 접수된 신청에 적용

국가 식량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 분야에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식량안보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이 제공됨:

| 대상 기업 | 세제 혜택 |
|----------------------------|---|
| 신규 식량 생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 법정소득(SI)에 대해 10개 과세연도(YA) 동안 100% 소득세 면제* |
| 기존 기업이 식량 생산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경우 | 법정소득(SI)에 대해 5개 과세연도(YA) 동안 소득세 면제* |

* 국내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면제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MAFS에 접수된 신청에 한함)

세제 혜택

밀폐형 축사 시스템을 활용한 양계

기존에 재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식품부(MAFS)에 신청되는 밀폐형 축사 시스템을 활용한 양계에 대해, 100% 가속자본공제(ACA) 및 100% 소득세 면제의 세제 혜택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일한 2023년도 예산안(재상정)에서는, 작물 재배, 축산, 양봉, 양식 및 어업 활동에 대한 농업 부문의 자동화에 대해 100% ACA 및 최초 RM1,000만까지 적격자본지출(QCE)에 대한 100% 소득세 면제의 세제혜택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MAFS에 신청되는 경우에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밀폐형 축사 시스템을 활용한 양계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부문 자동화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100% ACA 및 최초 RM1,000만 QCE에 대한 100%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MAFS에 신청되는 밀폐형 축사 시스템을 활용한 양계 활동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모든 소득은 최대 3개 과세연도(YA)까지 면제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청 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MOF에 접수된 신청에 한함)

세제 혜택

병원 복지기금 및 기부기금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발표되었습니다.

- 보증유한회사가 관리하는 병원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민간 병원은, 해당 복지기금이 수령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금 기부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은 기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해당 기부기금은 반드시 해당 국립대학교 부속병원이 단독으로 관리 및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기부기금에 대한 현금 기부는 「소득세법 1967」 제44조 제11D항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조치는 2026 과세연도(YA)부터 시행됩니다.

PwC 코멘트

위 제안들이 1967년 소득세법(ITA) 제44조 제6항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병원 복지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어떻게 관련되거나 비교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Xavvy 8-2024 참조](#)).



세제 혜택

기부/증여/후원금

말레이시아 박물관청(Department of Museums Malaysia)의 신탁계좌에 대해 개인 및 법인기업이 현금 기부를 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액에 상응하는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음)

Kampung Angkat MADANI, Sekolah Angkat MADANI 및 Sejahtera MADANI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 관련 소득 공제

기업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Kampung Angkat MADANI, Sekolah Angkat MADANI, 그리고 Sejahtera MADANI 프로그램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 소득 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음)

제안된 소득공제는 민간 기업과 개인이 이러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자금과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 이니셔티브는 농촌 지역의 생활 수준, 기초 인프라, 지속 가능한 경제 기회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PwC 코멘트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의 기준 및 지출 유형 (예: 현금인지, 사전 승인된 항목인지 여부)
- 해당 소득공제가 단일공제(single deduction)인지 이중공제(double deduction)인지 여부

세제 혜택

| 현행 | 개정안 |
|---|--|
| <p>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p> | |
| <p>전과자, 마약 중독자,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추가 소득공제가 제공됨.</p> <p>2023년 예산안에서는 다음 기관의 현재 및 과거 입소자에게 지급된 고용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 교도소 산하 헨리 거니 학교 치료 및 치료 재활 센터와 사회복지부에 등록된 비정부 보호 시설 <p>추가 소득공제는 2025 과세연도까지 제공됨.</p> | <p>1995년 교도소법(Prisons Act 1995)에 따라 조건부 석방된 수형자 및 1983년 약물 및 물질 의존자 및 남용자(치료 및 재활)법(Drug and Substance Dependents and Misuser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Act 1983)에 따라 치료 및 재활 중인 약물/물질 의존자 및 남용자까지 대상이 확대됨.</p> <p>추가 소득공제는 5년 동안 제공됨.</p> <p>(2026 과세연도 2030 과세연도까지 유효)</p> |
| <p>노인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p> | |
| <p>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추가 세액공제가 제공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직원이 정규적으로 고용되어 있을 것 해당 직원의 월급여가 RM4,000 이하 일 것 고용주와 직원이 동일인이 아닐 것 고용주가 직원의 친척이 아닐 것 <p>추가 소득공제는 2025 과세연도까지 제공됨.</p> | <p>세제 혜택이 5년 연장됨.</p> <p>(2026 과세연도부터 2030 과세연도까지 유효)</p> |

세제 혜택

장애인(OKU) 및 간병인에 대한 직업훈련

장애인(OKU)의 직업훈련을 후원하는 기업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제공되던 이중 소득공제가 여성가족사회개발부(Ministry of Women, Family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인정한 기관에서 간병인(care worker)이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후원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됩니다.

(2026 과세연도부터 2027 과세연도까지 유효)



4

간접세



간접세

랑카위와 라부안으로 수입되는 고급 자동차(RM300,000 초과 가치)에 대한 면세 폐지

현재 랑카위(Langkawi) 또는 라부안(Labuan)으로 수입되는 모든 가격대의 자동차는 관세, 소비세 및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RM300,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랑카위 또는 라부안으로 수입할 때 관세, 소비세 및 판매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안 기능이 강화된 디지털 세금 인지 도입

현재 말레이시아 내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담배, 담배 제품 및 주류(증류주, 와인, 맥주, 스타우트 등 유사 제품)에는 세금 인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위조 방지 및 세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검색센터(Centralised Screening Complex)의 CCTV 시스템을 통해 입국 지점(국경)에서 보안 기능이 강화된 디지털 세금 인지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행일은 명시되지 않음)

PwC 코멘트

디지털 세금 인지는 과세 대상 물품의 진위 확인, 추적 및 모니터링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부가 세금 행정과 납세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세금 인지의 사용이 담배 및 주류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금 인지 취득 절차 및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접세

니코틴 대체 치료제에 대한 관세 및 판매세 면제 연장

현재 니코틴 껌 및 니코틴 패치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관세 및 판매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 면세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1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면세 대상 품목을 니코틴 미스트(nicotine mist) 및 니코틴 로젠지(nicotine lozenges)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PwC 코멘트

이 제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mQuit 프로그램 및 폐 건강 증진 이니셔티브(Lung Health Initiative)의 일환이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른 말레이시아의 금연 치료 제공 의무 이행과도 부합합니다. 해당 면세 혜택은 신청을 통해 부여되며, 기업은 관련 지침 및 자격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 택시 및 렌터카 사업자의 PROTON 및 PERODUA 신차 구매 시 소비세 및 판매세 면제 연장

개인 택시 및 렌터카 사업자가 PROTON 또는 PERODUA의 신차를 구매할 경우, 현재 적용 중인 소비세(excise duty) 및 판매세(sales tax) 면제 혜택이 계속 유지됩니다.

PwC 코멘트

PROTON 및 PERODUA 차량에 대한 소비세 및 판매세 면제 연장은 국산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인 택시 및 렌터카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간접세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excise duty) 세율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제품 유형 | 관세 코드 | 기존 소비세율 (2025년 11월 1 일 이전) | 변경 후 소비세율 (2025년 11월 1일부터) |
|---------------------------------------|---|-------------------------------|-------------------------------|
| 궐련(Cigarettes) | 2402.20.20 00 2402.20.90 00 2402.90.20 00 | 스틱당 RM0.40 | 스틱당 RM0.42 |
|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 2402.10.00 00 2402.90.10 00 | 킬로그램당 RM400 | 킬로그램당 RM440 |
| 가열 담배 제품 (Heated tobacco products) | 2404.11.00 00 | 담배 함량 1kg당 RM778 | 담배 함량 1kg당 RM798 |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PwC 코멘트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은 비록 판매세율이 여전히 10%로 유지되더라도, 판매세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판매세가 소비세를 포함한 총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궐련의 경우 스틱당 RM0.02, 시가의 경우 킬로그램당 RM40, 가열담배의 경우 담배 함량 1킬로그램당 RM20씩 소비세가 인상되면, 그만큼 판매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세율은 변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할 판매세 금액은 증가하게 되며, 이는 수입업자와 제조업체의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류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

주류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주류에 부과되는 소비세물율을 10% 인상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PwC 코멘트

제안된 소비세 인상은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판매세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세가 소비세를 포함한 총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5

인지세



인지세

| 현행 | 개정안 |
|--|---|
| 주거용 주택 양도 | |
| <p>1949년 인지세법(SA 1949) First Schedule 제32(aa)항에 따라,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개인 및 외국계 기업이 체결한 부동산 양도 문서에 대해 4%의 고정 인지세율 적용.</p> | <p>말레이시아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개인 및 외국계 기업이 체결한 주거용 주택 양도 문서에 대한 인지세율을 4%에서 8%로 인상.</p> <p>(2026년 1월 1일부터 체결되는 주택 양도 문서에 적용)</p> |
| 구조화 워런트 매수 거래에 대한 계약서 (contract note) | |
| <p>구조화 워런트의 매매 거래에 대한 계약서에는 0.1%의 인지세율이 적용되며, 계약서당 최대 RM200으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음.</p> | <p>구조화 워런트 매수 거래에 대한 계약서에 대해 3년간 인지세를 면제.</p> <p>(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매수 거래 계약서)</p> |
| 근로계약서 인지세 | |
| <p>1949년 인지세법(SA 1949) First Schedule 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RM10의 인지세가 부과됨. 단, 월급이 RM300 이하인 계약은 인지세 면제.</p> | <p>인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월급 기준을 RM300에서 RM3,000으로 상향.</p> <p>(2026년 1월 1일부터 체결되는 근로계약서에 적용)</p> |
| <p>PwC 의견: 제안된 인지세 면제 기준 상향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p> <p>다만, 월급이 RM3,000 이하인 고용계약서에 대해서도 여전히 인지세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요구됩니다.</p> | |

인지세

다음은 만료가 임박했던 인지세 면제 조치 중 연장이 발표된 항목들의 요약입니다:

| 면제 항목 | 연장 기간 | 적용 기간 |
|--|-------|---|
| <p>1. 생애 최초 주거용 주택 구입</p> <p>가액이 RM500,000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 문서 및 대출 또는 금융 문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p> | 2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따른 양도 문서 및 대출 계약서에 적용 |
| <p>2. 중소·영세기업(MSME)이 구매한 보험 또는 타카풀 상품</p> <p>연간 보험료 또는 타카풀 납입금이 RM250 이하인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적격 보험 또는 타카풀 상품에 대해, 인가된 보험사 또는 타카풀 운영사가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타카풀 증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p> | 3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보험증권 또는 타카풀 증서에 적용 |
| <p>3. Perlindungan Tenang 보험 및 타카풀 상품</p> <p>연간 보험료 또는 타카풀 납입금이 RM150 이하인 Perlindungan Tenang 상품에 대해, 인가된 보험사 또는 타카풀 운영사가 발행한 보험증권 및 타카풀 증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p> | 3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Perlindungan Tenang 보험증권 및 타카풀 증서에 적용 |
| <p>4. Bursa Malaysia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계약서</p> <p>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ETF 거래 계약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p> | 3년 |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ETF 거래 계약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 적용 |

6

탄소세



탄소세

탄소세 도입

앞서 발표된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6년까지 철강 및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탄소세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해당 제도는 국가 탄소시장 정책(National Carbon Market Policy) 및 2026년 도입 예정인 국가 기후변화법안(National Climate Change Bill)과 연계하여 조율될 것입니다.

(2026년 도입 예정)

PwC 코멘트

시행 시점 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제도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세금이 전체 배출량에 대해 부과되는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는지
- 적용 대상 배출이 온실가스 배출 범주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 (예: Scope 1, Scope 2, Scope 3 배출 포함 여부)
- 세율 (예: 이산화탄소환산톤당 RM)
- 과세 기간 (예: 역년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용어집

| 약어/약어 | 묘사 |
|----------|--|
| ACA | 가속자본공제 (Accelerated capital allowance) |
| AI | 인공지능 |
| CA | 자본공제 |
| EV | 전기 자동차 |
| GITA | 녹색투자세금공제 (Green Investment Tax Allowance) |
| HRDF | 인적자원개발기금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
| ICT |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 ITA | 투자세금공제 |
| ITA 1967 | 1967년 소득세법 |
| LLP | 유한책임파트너십 |
| MAFS | 농업 및 식량 안보부 |
| MIDA |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
| MOF |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
| MOTAC | 관광예술문화부 (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
| MSME | 중소·영세기업 |
| QCE | 적격 자본 지출 (Qualifying capital expenditure) |
| R&D | 연구 및 개발 |
| SC | 증권위원회 (Securities Commission) |
| SI | 법정 소득 (Statutory income) |
| SA 1949 | 1949년 인지법 |
| YA | 과세 연도 (Year of assessment) |

PwC 말레이시아의 2026년 예산 세미나

| | 쿠알라룸푸르 | 페낭 |
|-----------------|--|---|
| 날짜: |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 2024년 11월 11일 화요일 |
| 시간: | 오전 8:00 - 오후 5:30 | 오전 8:30 - 오후 5:00 |
| 장소: | 만다린 오리엔탈, 쿠알라룸푸르 | 이스턴 & 오리엔탈 호텔, 페낭 |
| Contact: | Aarif Ibrahim / Fazlina Jaafar (03) 2173 1188 / 3830 | Ann Yew / Nurnatasya Rahim (04) 238 9291 / 9148 |
| Email: | my_events@pwc.com | siew.lay.yew@pwc.com / nurnatasya.rahim@pwc.com |
| 온라인 등록: |  pwc.to/US-QR-mgg3eizp |  pwc.to/US-QR-mgi6hnwo |

| | 조호르 | 쿠칭 |
|-----------------|---|--|
| 날짜: |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
| 시간: | 오전 8:00 - 오후 5:30 | 오전 8:00 - 오후 1:00 |
| 장소: | 더블트리 바이 힐튼, 조호바루 | 강당, 보르네오 문화 박물관, 쿠칭 |
| Contact: | Hanisah Azman / Izyan Diyana Zainal (07) 218 6000 | Geraldine Tan / Chan Su Feng (082) 527 218 |
| Email: | hanisah.azman@pwc.com / izyan.diyana.zainal@pwc.com | geraldine.peiying.tan@pwc.com / su.feng.chan@pwc.com |
| 온라인 등록: |  pwc.to/US-QR-mgj8coxa |  pwc.to/US-QR-mgi6c1at |

PwC 말레이시아 Tax Booklet

전략 계획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말레이시아 세금 책자는 일상적인 세금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 세금 책자는 세법, 현행 관행 및 당국이 제안한 조치를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세금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빠른 참조 가이드입니다. 이 간행물에는 2025년 10월 10일 2026년 예산 발표를 기반으로 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상황에서 과세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여 즉시 액세스



pwc.to/4mAMMHr



연락처

Our Offices

쿠알라룸푸르

Steve Chia

steve.chia.siang.hai@pwc.com
+60(3) 2173 1572

조호바루 & 멜라카

Benedict Francis

benedict.francis@pwc.com
+60(7) 218 6000

페낭 & 이포

Kang Gaik Hong

gaik.hong.kang@pwc.com
+60(4) 238 9225

Nur Diyana Ahmad Fauzi

nur.diyana.ahmad.fauzi@pwc.com
+60(4) 238 9230

쿠칭

Lee Yuien Siang

yuien.siang.lee@pwc.com
+60(8) 252 7202

Keegan Ong

keegan.sk.ong@pwc.com
+60(3) 2173 1684

라부안

Jennifer Chang

jennifer.chang@pwc.com
+60(3) 2173 1828

법인세 규정 준수 및 자문

소비자 및 산업

제품 서비스

Margaret Lee

margaret.lee.seet.cheng@pwc.com
+60(3) 2173 1501

Steve Chia

steve.chia.siang.hai@pwc.com
+60(3) 2173 1572

Clifford Yap

clifford.eng.hong.yap@pwc.com
+60(3) 2173 1446

Taariq Murad

taariq.murad@pwc.com
+60(3) 2173 1580

Hee Sien Yian

sien.yian.hee@pwc.com
+60(3) 2173 0222

Cynthia Ng

cynthia.hh.ng@pwc.com
+60(3) 2173 1438

Alvin Woo

alvin.jm.woo@pwc.com
+60(3) 2173 1820

Emily Yew

lock.ling.yew@pwc.com
+60(3) 2173 0363

Lim Yih Shuin

yih.shuin.lim@pwc.com
+60(3) 2173 0916

금융 서비스

Jennifer Chang

jennifer.chang@pwc.com
+60(3) 2173 1828

Lim Phaik Hoon

phaik.hoon.lim@pwc.com
+60(3) 2173 1535

Lorraine Yeoh

lorraine.yeoh@pwc.com
+60(3) 2173 1499

Tan Tien Yee

tien.yee.tan@pwc.com
+60(3) 2173 1584

신흥 시장

Fung Mei Lin

mei.lin.fung@pwc.com
+60(3) 2173 1505

Michelle Chuo

michelle.sy.chuo@pwc.com
+60(3) 2173 1289

서비스 및 인프라

Lim Phaik Hoon

phaik.hoon.lim@pwc.com
+60(3) 2173 1535

에너지, 유틸리티 및 광업

기술, 미디어 및 통신

Heather Khoo

heather.khoo@pwc.com
+60(3) 2173 1636

Lavindran Sandragasu

lavindran.sandragasu@pwc.com
+60(3) 2173 1494

Keegan Ong

keegan.sk.ong@pwc.com
+60(3) 2173 1684

Ang Wei Liang

wei.liang.ang@pwc.com
+60(3) 2173 1597

Aurobindo Ponniah

aurobindo.ponniah@pwc.com
+60(3) 2173 3771

Zarina Othman

zarina.sheikh.othman@pwc.com
+60(3) 2173 1615

Shalini Sathiveil

shalini.s.sathiveil@pwc.com
+60(3) 2173 0343

연락처 (계속)

전문 서비스

자본 투자 및 친환경 인센티브

Richard Baker
richard.baker@pwc.com
+60(3) 2173 0644

차이나 데스크

Lorraine Yeoh
lorraine.yeoh@pwc.com
+60(3) 2173 1499

기업 서비스

Lee Shuk Yee
shuk.yee.x.lee@pwc.com
+60(3) 2173 1626

기업 지원 서비스

Mohd Haizam Abdul Aziz
mohd.haizam.abdul.aziz@pwc.com
+60(3) 2173 5355

분쟁 해결

Tai Weng Hoe
weng.hoe.tai@pwc.com
+60(3) 2173 1600

Chris Tay

christopher.h.tay@pwc.com
+60(3) 2173 1143

간접세

Raja Kumaran
raja.kumaran@pwc.com
+60(3) 2173 1701

Abd Gani Othman

abdgani.othman@pwc.com
+60(3) 2173 1648

Geeta Balakrishnan

geeta.b.balakrishnan@pwc.com
+60(3) 2173 1652

Annie Thomas

annie.thomas@pwc.com
+60(3) 2173 3539

개인소득세

Michelle Chuo
michelle.sy.chuo@pwc.com
+60(3) 2173 1289

국제 세무 서비스 / 인수 합병

Gan Pei Tze
pei.tze.gan@pwc.com
+60(3) 2173 3297

Lim Chee Keong

chee.keong.lim@pwc.com
+60(3) 2173 0639

Lee Boon Siew

boon.l.lee@pwc.com
+60(3) 2173 0932

일본 비즈니스 컨설팅

Yuichi Sugiyama
yuichi.sugiyama@pwc.com
+60(3) 2173 1191

Clifford Yap

clifford.eng.hong.yap@pwc.com
+60(3) 2173 1446

코리아 데스크

Keegan Ong
keegan.sk.ong@pwc.com
+60(3) 2173 1684

손한희 이사

hanhee.s.son@pwc.com
+60(3) 2173 0625

신규 법 (New Law)

Anushia Soosaipillai
anushia.joan.soosaipillai@pwc.com
+60(3) 2173 1419

세금 보고 및 전략

Lavindran Sandragasu
lavindran.sandragasu@pwc.com
+60(3) 2173 1494

Pauline Lum

pauline.ml.lum@pwc.com
+60(3) 2173 1059

Mohd Haizam Abdul Aziz

mohd.haizam.abdul.aziz@pwc.com
+60(3) 2173 5355

Tax Technology

Yap Sau Shiung
sau.shiung.yap@pwc.com
+60(3) 2173 1555

Joey Chong

joey.chong@pwc.com
+60(3) 2173 0092

Workforce Tax

Kartina Abdul Latif
kartina.a.latif@pwc.com
+60(3) 2173 0153

Mohammad Iesa Morshidi

iesa.morshidi@pwc.com
+60(3) 2173 3136

세계무역 관리 서비스

Chandrasegaran Perumal
chandrasegaran.perumal@pwc.com
+60(3) 2173 3724

이전 가격

Anushia Soosaipillai
anushia.joan.soosaipillai@pwc.com
+60(3) 2173 1419

Jagdev Singh

jagdev.singh@pwc.com
+60(3) 2173 1469

Desmond Goh

desmond.goh.keng.hong@pwc.com
+60(3) 2173 1439

Lim Ying Tian

ying.tian.lim@pwc.com
+60(3) 2173 0291

Ong Ai Ling

ai.ling.ong@pwc.com
+60(3) 2173 0711

Lilia Edlina Azmi

lilia.edlina.azmi@pwc.com
+60(3) 2173 1498

Dave Law

dave.l.law@pwc.com
+60(3) 2173 0614



Tax in Motion은 PricewaterhouseCoopers Taxation Services Sdn Bhd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입니다. 이 뉴스레터를 편집하는 데 모든 주의를 기울였지만 어떤 목적으로든 정보의 정확성, 적합성, 신뢰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명시적 또는 묵시적)도 하지 않습니다. PricewaterhouseCoopers Taxation Services Sdn Bhd, 그 직원 및 대리인은 이 간행물에 포함된 정보 또는 이에 기반한 결정에 의존하여 행동하거나 행동을 자제하는 사람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수혜자는 귀하의 상황, 요구 사항 또는 필요에 맞는 구체적인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2025 PricewaterhouseCoopers Taxation Services Sdn Bhd.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and/or "PwC" refers to the individual members of the PricewaterhouseCoopers organisation in Malaysia,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